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876

발의연월일: 2025. 2. 3.

발 의 자:이용우·박해철·정혜경

김문수 • 박지원 • 이수진

김태선 · 김 유 · 장종태

이광희 • 이강일 • 이학영

한창민 • 백승아 • 정진욱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8년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, 이후 사용자들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상여금이나 실비성 복리후생비를 증가시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하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 통상임금은 연장 및 야간임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,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연장 및 야간근로를 장시간활용하려는 유인이 있게 됨. 근로기준법은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할증을 통하여 그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제하려는 데에취지가 있는 만큼,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법의 기본적 취지에 위배됨. 이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경우,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「최저임금법」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한다. 다만, 「최저임금법」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・② (생 략)	제2조(정의) ①・② (현행과 같
	음)
<u><신 설></u>	③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「최
	저임금법」 제5조에 따른 최저
	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
	을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
	한다. 다만, 「최저임금법」 제
	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
	제외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
	그러하지 아니하다.